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3일, 김기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표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 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 36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도입된 특례로,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음.

김기표의원안은 동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현재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